

국토교통부령

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
일부개정령안

기 관 명 (부 서 명)	국무위원 ○○○ (국토교통부장관)
연 월 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사회적·환경적 변화를 반영하여 「건축법」 상 새로이 신설된 용도 등에 대해 건축물의 중요도를 검토·설정하여,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은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를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.

2. 주요내용

가. 표 11의 중요도 및 중요도 계수에 ‘데이터센터’를 중요도 “특”과 “1”로 구분·신설

「건축법」 개정('18.9.)에 따른 신설 용도로서 방송통신시설 관련시설인 데이터센터 중 용도와 규모를 고려하여 행정운영에 필요한 ‘연면적 1000m² 이상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센터’는 중요도 “특”으로 신설하고, 그 외 데이터센터는 국민의 건강정보, 금융정보 등 여러 데이터 관리 및 활용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중요도 “1”로 신설함

나. 표 11의 중요도 및 중요도 계수에 ‘교정시설’ 일부를 중요도 “1”로 신설
채소자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이용자 밀도가 높은 교정시설은 숙박시설·아파트 등에 준하여 5층 이상인 경우 중요도 “1”로 신설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0. 0. ~ .) 결과, 특기할 사항없음

3) 행정규제 :

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1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의 중요도 특란 제1호의 “연면적 1000m² 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·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·외국공관·소방서·발전소·방송국·전신전화국”을 “연면적 1000m² 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·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·외국공관·소방서·발전소·방송국·전신전화국·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센터”로 하고,

같은 표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의 중요도 1란 제1호에 “중요도 특에 해당하지 않는 데이터센터”를 추가로 신설하며,

같은 표 중요도 1란 제4호의 “5층 이상인 숙박시설·오피스텔·기숙사·아파트”를 “5층 이상인 숙박시설·오피스텔·기숙사·아파트·교정시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				개정안				
[별표 11] 중요도 및 중요도계수 (제56조제2항 관련)					[별표 11] 중요도 및 중요도계수 (제56조제2항 관련)				
중요도	특	1	2	3	중요도	특	1	2	3
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	1.연면적 1,000㎡ 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·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·외국 공관·소방서·발전소·방송국· <u>신설</u>	1. 연면적 1,000㎡ 미만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·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·외국공관·소방서·발전소·방송국· <u>신설</u>	1. 중요도 (특), (1), (3)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	1. 농업시설물, 소규모창고	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	1.연면적 1,000㎡ 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·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·외국 공관·소방서·발전소·방송국· <u>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센터</u>	1. 연면적 1,000㎡ 미만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·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·외국공관·소방서·발전소·방송국· <u>전신전화국, 중요도(특)에 해당하지 않는 데이터센터</u>	1. 중요도 (특), (1), (3)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	1. 농업시설물, 소규모창고
	2. 종합병원, 수술 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	2. 연면적 5,000㎡ 이상인 공연장·집회장·관람장·전시장·운동시설·판매시설·운수시설(화물터미널과 집배송시설은 제외함)		2. 가설구조물		2. 연면적 5,000㎡ 이상인 공연장·집회장·관람장·전시장·운동시설·판매시설·운수시설(화물터미널과 집배송시설은 제외함)	2. 연면적 5,000㎡ 이상인 공연장·집회장·관람장·전시장·운동시설·판매시설·운수시설(화물터미널과 집배송시설은 제외함)		2. 가설구조물
중요도계수		3. 아동관련시설·노인복지시설·사회복지시설·근로복지시설			중요도계수	2. 종합병원, 수술 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	3. 아동관련시설·노인복지시설·사회복지시설·근로복지시설		
		4. 5층 이상인 숙박시설·오피스텔·기숙사·아파트· <u>신설</u>					4. 5층 이상인 숙박시설·오피스텔·기숙사·아파트· <u>교정시설</u>		
		5. 학교					5. 학교		
		6. 수술시설과 응급시설 모두 없는 병원, 기타 연면적 1,000㎡ 이상인 의료시설로서 중요도(특)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					6. 수술시설과 응급시설 모두 없는 병원, 기타 연면적 1,000㎡ 이상인 의료시설로서 중요도(특)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		
	1.5	1.2	1.0	1.0		1.5	1.2	1.0	1.0